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518

발의연월일: 2025. 1. 15.

발 의 자:이해식・박정현・정을호

김문수・채현일・조정식

이상식 · 황명선 · 남인순

서영교 · 차지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안건심의, 국정감사 또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·참고인·감정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, 그 절차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 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최근 위원회에 출석한 현직 공무원인 증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안면을 가리고 나와, 위원장이 안면을 노출하라는 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현행법은 이를 제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.

이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의장이나 위원장의 동의 없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안면을 가릴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

로써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임(안 제5조제9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본회의 나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신원을 확인 할 수 없을 정도로 안면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의장 또는 위 원장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) ①	제5조(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) ①
~ ⑧ (생 략)	~ ⑧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⑨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
	사람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
	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때
	에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
	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
	<u>안면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. 다</u>
	만, 의장 또는 위원장의 동의를
	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
	<u>하다.</u>